

「2026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공모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술·경영혁신과 모범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포상하고자 “2026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시상부문

- 대 상 : 1개 기업
- 최우수상 : 2개 기업
- 우 수 상 : 3개 기업

2. 추천대상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內에 본사와 사업장 (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생산·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3. 신청(추천) 제외대상

- 1) 동일한 공적으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을 기 수상한 기업(대표자)
※ 단, 공고일 기준 수상 후 3년이 지난 기 수상 기업이 상위등급 수상을 위한 신청은 가능
- 2) 결산재무제표 기준 2024년도 또는 2025년도 당기순손실 발생 기업
- 3) 자본잠식 기업
- 4)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3년 평균의 5배를 초과하는 기업
※ '한국은행 기업경연분석' 기준(2024 발간) / 단, 시설투자 등 단기부채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용 가능
- 5) 2026년도 정부 포상업무 지침에 따른 포상추천 제한에 해당하는 자(불임)
※ 포상수여 후에도 위 해당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회수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 2026. 7. 15.(수) ~ 8. 12.(수)

5. 신청접수

- 신청기간 內 각 후보 업체 → 추천기관에 신청서 제출

※ 추천기관에서 대구광역시(경제정책관) 일괄 신청 접수(8. 13. ~ 8. 18.)

6. 추천기관

구 분	추천기관	비고
행정기관	▶구청장·군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관할기업
경제단체	▶대구상공회의소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 ▶대구경영자총협회장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회원업체 지원업체 관리업체 등 소관기업
유관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다이텍연구원장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 ▶기술보증기금 대구지점장 등	회원업체 지원업체 관리업체 등 소관기업

7.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및 구비서류, 추천서, 동의서, 가점사항 증빙서류 등

8. 수상업체 선정

- 서류접수·결격사유 조회 후 관련 전문기관의 재무평가,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대상규칙」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재무평가 :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생산성 등
- 실태조사 : 기업여건·경영능력, 고용·노사관리, 사업성, 기술성, 인증가점*
 - * 중앙·특별지방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기업 관련 인증서(건당 1점, 최대 2점)
 - 스타기업 100, Pre-스타기업, 대구 지역스타기업, INNO-BIZ기업, MAIN-BIZ기업 등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발급되고 현재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관련 인증서
- 최종심사 :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
 -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9. 수상기업 특전

-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우대(수상 후 2년 이내)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추가 우대(0.2%)
-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
- ▶ 「대구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유예(3년)
-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10.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관(☎053-803-3393), 구·군 경제부서, 대구상공회의소 등 추천기관

11.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합니다.

(붙임)

포상추천 제외대상

□ '202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포상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자

202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발췌) (2026.1.1. 행정안전부 시행)

□ 분야별 포상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별첨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

업체명	한글		대표자	성명(한자)	()
	영문			생년월일	
설립일				산재보험관리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우편번호(-)			
	사업장	우편번호(-)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
담당자				이메일	@
재무현황	구분	2024년(A)		2025년(B)	
	유동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총계				
	연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연수출액				
주1) 산업분류				주2) 종업원수	명
주 생산품목명 및 사용용도		1. 2.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중소기업대상 신청관련 동의서(소정양식) 3. '24, '25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4. '24, '25년말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5.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6. 국세, 관세, 지방세 완납 또는 납세증명서(채납명단공개증인자 중 기관추천전까지 완납시)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주3)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 8.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 주1) 통계청 홈페이지(www.kssc.kostat.go.kr),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료를 확인하여 5자리로 정확히 기재
* 주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서류의「A01」항 인원을 작성
* 주3)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포털 이용 확인

기 업 현 황

기
업
현
황

■ 기술수준 및 제품개발실적

○ 기술개발조직 및 기술인력, 기술개발노력, 제품개발실적, 품질관리부서 및 품질경영 등

■ 생산성 향상 및 사업현황

○ 시장현황 및 특성, 주요거래처, 경쟁업체 현황 등

■ 기업여건 및 경영능력

○ 경영방침, 직원교육현황, 노사화합, 일자리창출, 지속가능 경영관리(ESG) 등

■ 신기술 보유 현황

구 분	기술(품목)	등록번호	등록일	기 간	승인기관

■ 인증가점 사항

* 중앙·특별지방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이 발급한 기업관련 인증서(건당 1점, 최대 2점)

- 스타기업 100, Pre-스타기업, 대구 지역스타기업, INNO-BIZ기업, MAIN-BIZ기업 등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발급되고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관련 인증서

(별첨 2)

주요공적요약서

(추천서)

☐ 회사현황 ○ 회 사 명 : ○ 기업구분(중,소) : ○ 대 표 자(한자) : () ○ 소 재 지 :
☐ 주요공적요약
☐ 추천사유(특기사항 등)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 확인합니다. 2026. . . 추천기관명 직위 성명 직인

※ 추천기관장 명의로 작성하여 직인 날인 후 제출

(별첨 3)

대구 중소기업대상 신청관련 동의서

☐ 인적사항

회 사 명			
성 명		직 위	대표이사(대표)

위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공모 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포상 대상자 등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 대표이사(대표) 성명 (날인)

대구광역시 시장 귀하

(별첨 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 수집 · 이용 목적 및 범위

- (목적) 중소기업대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중소기업대상 심사평가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
- (수집항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 기업식별정보, 연락처(이메일 및 전화번호), 공모 신청 및 구비서류 일체
- (이용범위)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한 정보는 관련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서 보관하며 기간이 경과한 경우 폐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중소기업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포상 결격사유 조회 및 1차 재무평가 및 실태조사를 위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기관에게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신청 및 진행에 일부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2026. . .

신청기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시장 귀하